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8.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9. 12. 3) 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안 동 수)

###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안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 지방세 납세증명 1건 800원 ⇒ 삭제
  - 무적증명 1건 500원 ⇒ 삭제
  - 부존재증명 1건 200원 ⇒ 신설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 1건 1,000원 ⇒ 삭제
  -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1건 1,000원 ⇒ 삭제
  - 영화상영관 신규 등록 1건 20,000원 ⇒ 신설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1건 10,000원 ⇒ 신설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 1건 20,000원 ⇒ 신설
  -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 1건 10,000원 ⇒ 신설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 신설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현황(2009.10.31현재)

(단위 : 천원)

| 구 분      | 건 수    | 금 액    | 비 고 |
|----------|--------|--------|-----|
| 지방세 납세증명 | 54,048 | 43,238 |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 오 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249 호 |
|----------|---------|

제출연월일 : 2009.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사유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가.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2009.9.21)에 따라 발급 수수료 폐지

나. 무적증명 수수료는 호적법 폐지(2007.5.17)에 따라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5.17)에 따라 부존재증명 수수료 신설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수수료는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고 입찰 참가등록을 조달청에 직접 전자로 등록하고 있어 수수료 폐지

라.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수수료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2009.3.25 제정되고 2009.9.26로 시행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수수료)에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말소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서 삭제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90조의 개정(2009.5.8)에 따라 영화업 신고 등의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영화상영권 등록 및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신설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민원여권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와 협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조표 : 별첨

(2) 입법예고(2009.10.15 ~ 2009.11.4)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1)지방세 납세증명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라목 중 2)무적증명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라목에 4)부존재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단위: 원) |
|---------|----|-------------|
| 4)부존재증명 | 1건 | 200         |

별표 제1호바목 중 1)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8)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2호마목에 21)영화상영관 신규 등록란, 22)영화상영관 변경 등록란, 23)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란, 24)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란 및 25)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단위: 원) |
|---------------------------|----|-------------|
| 21)영화상영관 신규 등록            | 1건 | 20,000      |
| 22)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 1건 | 10,000      |
| 23)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 | 1건 | 20,000      |
| 24)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 | 1건 | 10,000      |
| 25)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 1건 | 5,000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    |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    |        |
|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6종) (단위 : 원)         |    |       |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4종) (단위 : 원)             |    |        |
| 종 목                                  | 단위 |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br>1) 지방세 납세증명    | 1건 | 800   |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br>〈 삭제 〉             |    |        |
| 2) (생략)                              |    |       | 2) (현행과 같음)                              |    |        |
| 3) (생략)                              |    |       | 3) (현행과 같음)                              |    |        |
| 나~다. (생략)                            |    |       | 나~다. (현행과 같음)                            |    |        |
|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br>1) (생략)     | 1건 | 500   |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br>1) (현행과 같음)     |    |        |
| 2) 무적증명                              |    |       | 〈 삭제 〉                                   |    |        |
| 3) (생략)                              |    |       | 3) (현행과 같음)                              |    |        |
| 〈 신설 〉                               |    |       | 4) 부존채증명                                 | 1건 | 200    |
| 마. (생략)                              |    |       | 마. (현행과 같음)                              |    |        |
| 바. 회계관계 증명<br>1)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 1건 | 1,000 | 바. 회계관계 증명<br>〈 삭제 〉                     |    |        |
| 2) (생략)                              |    |       | 2) (현행과 같음)                              |    |        |
| 사. (생략)                              |    |       | 사. (현행과 같음)                              |    |        |
|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4종) (단위 : 원)      |    |       |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8종) (단위 : 원)          |    |        |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 가. (생략)                              |    |       | 가. (현행과 같음)                              |    |        |
|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br>1)~7) (생략)        | 1건 | 1,000 |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br>1)~7) (현행과 같음)        |    |        |
| 8) 건설기계 저장등록(말소) 신청                  |    |       | 〈 삭제 〉                                   |    |        |
| 다~라. (생략)                            |    |       | 다~라. (현행과 같음)                            |    |        |
|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br>1)~20) (생략) |    |       |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br>1)~20) (현행과 같음) |    |        |
| 〈 신설 〉                               |    |       | 21) 영화상영권 신규 등록                          | 1건 | 20,000 |
|                                      |    |       | 22)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                          | 1건 | 10,000 |
|                                      |    |       | 23)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               | 1건 | 20,000 |
|                                      |    |       | 24)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               | 1건 | 10,000 |
|                                      |    |       |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 1건 | 5,000  |
| 바. (생략)                              |    |       | 바. (현행과 같음)                              |    |        |
| 3~4. (생략)                            |    |       | 3~4. (현행과 같음)                            |    |        |